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안향선생 동상 건립】

영 주 시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28
----------	-----

제출년월일 : 2005.11.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제안 이유

우리시가 2006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향선생 동상 건립>

◦ 사업계획

- 위 치 : 순흥면 내죽리 151-2(소수서원 내)
- 형태및규격 : 좌상, 높이 4.3m(붙임참조)
- 사 업 비 : 200,000천원(시비 120,000 자부담 80,000)
 - 자부담 : 순흥 안씨 대종회에서 기부
- 사 업 내 용 : 동상제작, 조경, 토목, 조명공사 등

◦ 사업효과

- 고려 말 최초의 주자학자로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하여 문교진흥과 제자육성을 통해 유풍을 진작시킨 안향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 순흥이 본향이며, 소수서원의 중심인물인 “안향선생의 동상”을 소수서원 부지 내에 건립함으로써 소수서원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 더 많은 관광객 유치 기여

• 추진일정

- 2006. 1월 : 설계의뢰
- 2006. 2월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
- 2006. 3월 : 착공
- 2006. 8월 :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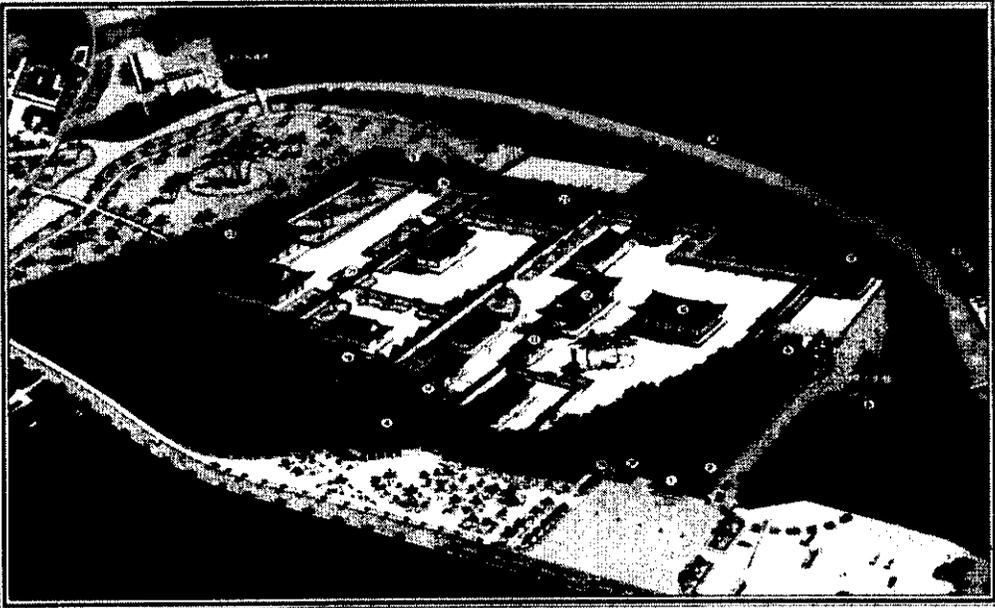
3.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붙임 참조

- 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총괄표)
- ②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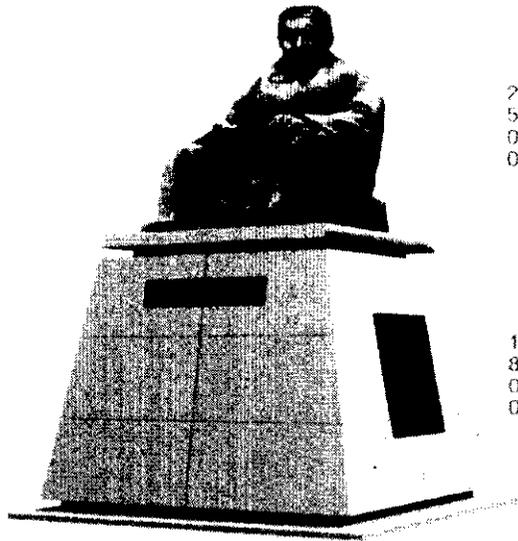
4. 관련법규

- ①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③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위치도



□ 동상 규격



작상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 <삭 제 99·1·21>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③ ~ ⑤ <생략>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 ③ <삭제 '95. 11. 18>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